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5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1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도읍의원)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동물병원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1조).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병원은 수의사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동물진료법인·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비영리법인도 개설할 수 있고, 동물병원 관리 의무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나, 진료거부 금지 의무는 오직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게만 부과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현행법상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진료거부 금지 의무 부과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모든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인(人)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서도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